

의무위원회 규정

2019. 8. 20. 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설치근거) 대한민국농구협회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 정관 제37조에 따라 의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, 운영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진행 중에 선수 및 선수단의 건강을 유지하고,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, 심의, 시행한다.

1. 각급 국가대표 경주시 의무인원의 선발 및 파견
2. 각급 국가대표선수의 체력 측정에 관여 및 정보의 수집
3. 각급 국가대표선수의 부상의 확인 및 경기 참가여부의 결정
4.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해 선수 및 선수단의 건강을 유지하고 경기 중 응급상황에 대한 의학적 처치
5. 각종 국제경기대회 여행 시 예방접종의 계획 및 처치
6. 1년 단위로 국가대표선수의 부상 빈도 및 부위를 정리, 발표
7. 선수, 감독 및 코치, 지원인력 등에 대한 도핑 관련 교육 및 상담
8. 유소년 농구선수에게 필요한 부상예방 프로그램의 작성 및 배포

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1명
3. 위원 7명 이상 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-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남녀농구로 구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, 회의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 등) ① 위원장은 의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, 위원은 의사, 물리치료사 혹은 선수트레이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동시에 스포츠의학 인증전문의 자격 혹은 스포츠의학 관련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회장이 위촉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1. 본회 정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 2.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%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.
 3. 위원회에 서울이외의 지역연고를 가진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, 여성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7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제9조(회의소집 등)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(U16~U19, 대학, 성인) 남녀농구 국각대표를 세분화하여 회의를 소집, 진행할 수 있다.

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.

제11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2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,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3조(경비의 지급) 본회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,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국가대표 트레이너의 선발 및 운영) 국가대표 트레이너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「국가대표 트레이너 선발 및 운영지침」에 따른다.

제15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 및 본회 정관, 기타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(2019. 8. 2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(2019. 8.20.)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